

RESOLUTION AND COMPLIANCE UNIT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ROCKVILLE, MARY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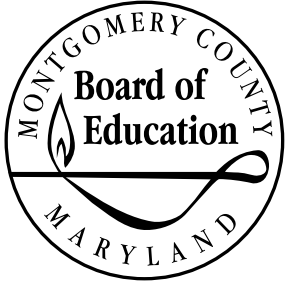
1973년 재활법(*Rehabilitation Act of 1973*)에 따른

504 조항 적용 안내서

2017-2018



ROCKVILLE, MARYLAND



비전

우리는 각 학생에게 최상의 공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배움에 대한 열정을 유도해냅니다.

사명

모든 학생이 학습 및 창조적 문제 해결 능력과 대학 및 직업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사회적 정서적 기량을 갖추도록 합니다.

핵심 목적

모든 학생에게 성공적인 미래를 준비시킵니다.

주요 가치

학습
관계
존중
우수
평등

교육위원회

Mr. Michael A. Durso
의장

Mrs. Shebra L. Evans
부의장

Ms. Jeanette E. Dixon

Dr. Judith R. Docca

Mrs. Patricia B. O'Neill

Ms. Jill Ortman-Fouse

Mrs. Rebecca K. Smondrowski

Mr. Matthew Post
학생의원

학교 행정

Jack R. Smith, Ph.D.
교육감(Superintendent of Schools)

Maria V. Navarro, Ed.D.
학업 관련 책임관(Chief Academic Officer)

Kimberly A. Statham, Ph.D.
학교 협력 및 행정 부교육감(Deputy Superintendent of School Support and Improvement)

Andrew M. Zuckerman, Ed.D.
행정 책임관(Chief Operating Officer)

850 Hungerford Drive
Rockville, Maryland 20850
www.montgomeryschoolsmd.org

1973년 재활법(Rehabilitation Act of 1973)에 따른 504 조항 적용 안내서

목차

서론	1
학생의 504 조항 해당 여부 진단하기	2
해당하는 MCPS 학생의 504 조항 계획 개발	4
504 조항 절차 검토 평가	6
504 조항 학생의 훈육 절차	7
관련 서비스	8
학부모/후견인 협력과 참여	8
504 조항 학생의 이의제기 절차	9
추가 자료 요청	9

부록

용어	9
MCPS 504 조항 양식	11
MCPS 규정과 보조 서류	11
MCPS 504 조항 관련 자료	11

감사

많은 MCPS 교직원과 이 책자 개발에 공헌해 주신 우리 학교 보건 서비스 파트너 관계자 모든 분께 감사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가치 있는 생각과 의견,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1973년 재활법(Rehabilitation Act of 1973)에 따른 504 조항 적용 안내서

미션 스테이트먼트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Services(DSES)의 미션은 출생부터 21세까지의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 연속적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 적용, 모니터하여 학생의 진로, 대학, 지역사회에의 준비를 대비하도록하는 것입니다.

서문

장애가 있는 학생에 대한 평등한 기회제공은 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1973년 재활법 504조항)과 미국 장애인 보호법 2008(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mendments Act of 2008)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는 쉬운 도움요청, 장애와 비장애 모두에게 동등하게 효과적인 혜택, 서비스와 도움 공급, 장애에 따른 차별에서 온전히 자유로운 프로그램과 활동 제공으로 번역됩니다.

같은 대우만이 아닌 공평한 기회 제공은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대우는 업무, 학습, 서비스에 기회의 균등을 이루기 위해 요구되는 장애인을 위한 조치나 조정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방법은 장애인 자격이 있는 개인은 차별을 겪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가 연방정부 기금을 받고 있으므로 교육구는 Rehabilitation Act of 1973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특별히, MCPS는 504 조항으로 알려진 이 법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504 조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장애를 갖은 개인은 개인의 손상/장애 이유로 인하여 연방 재정 도움을 받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에서 참여로의 제외, 혜택의 거부 등의 차별을 받지 않는다.

이 책자는 학생이 504 조항하에서의 보호/또는 조정에 해당할 학생의 자격을 위한 절차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504 조항 적용을 돕는 교육구의 규정이 미국 교육부, U.S. Department of Education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본 책자를 통해 법적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서에는 "모든 학생의 학습 및 창조적 문제 해결 능력과 대학 및 직업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회적 정서적 기량을 갖추도록 한다"라는 MCPS의 미션 정신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미션에 따라 2017년, Montgomery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교육위원회의 헌신을 확인하는 Policy ACA, 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를 종합적으로 갱신하여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의 헌신은 세계화되는 사회에서 모든 학생이 살고 일할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며 각 학생의 독특함과 차이를 환영하는 긍정적인 학습 환경이 되도록 하기 위한 기초를 만든다.

504 조항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학생을 위해, 장애에 따른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비장애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 이상의 도움과 조정이 포함된 높은 수준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 학교의 미래는 잘 교육되고 배려하며 헌신하는 직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교습 교직원은 다양한 학생의 필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폭넓은 범위의 교습 방법과 전략을 사용하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생의 504 조항 해당 여부 진단

개요

이 항목은 MCPS 교직원에게 학생이, 1973년 장애법 504 조항(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에 의해 보호 및/또는 조정에 해당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정의는 504 조항 평가를 위한 법요건으로 제공됩니다.

의뢰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으로 아직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IDEA)에 따른 장애 결정이 나지 않은 경우, 학교와/또는 학부모/후견인이 504 조항 평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¹ 의뢰를 받은 후, 504 조항 평가 회의일정을 정하고 학부모/후견인에게 이를 알리게 됩니다.

학생의 비공개/비밀유지 파일이 이 시점에서 만들어집니다. 504 조항에 관련된 모든 서류는 이 학생 비공개/비밀유지 파일에 보관하게 되며 MCPS에서 사용하는 504 조항 온라인 플랫폼의 모든 기록이 이에 추가로 포함됩니다.

504 조항 결정팀

504조항 규정은 504 조항에 따른 결정은 "학생을 잘 아는 사람, 평가 데이터의 의미를 잘 아는 사람 그리고 배치 옵션을 잘 아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MCPS에서는 504 조항 평가를 진행할 책임(그리고 다른 504 조항의 결정)은 학교의 504 조항팀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504 조항 해당 여부를 고려할 때, 학교장은 504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교직원으로 팀을 구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팀원 구성은 학생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 여부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 학교 간호사와 작업치료 또는 물리치료는 신체 또는 의학적 결함이 있을 경우에 권하게 됩니다. 정신적 정서적 결함(집중력 결함 포함)을 고려될 경우 학교 심리학자가 팀원으로 추천합니다.

504 조항 평가 회의 준비

504 조항 평가를 요청한 경우, 회의는 요청 후 3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며 학부모/후견인에게 일정과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의 학교 파일이 회의 참가자의 검토를 위해 회의 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학부모/후견인이 MCPS 외부 평가 서류를 MCPS 전문가의 검토를 위해 제공할 경우, MCPS Form 336-68, 적절한 교육구 내 전문가가 외부 보고서에 관한 팀의 고려사항(Team Consideration of External Report)을 작성해야 합니다.

회의에서의 새 정보 제공: 학부모/후견인이 MCPS 전문가가 회의 전에 정식으로 검토할 수 없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경우, 정보 교환 승인을 회의에서 받고 적절한 시간 내에 다시 회의를 재소집합니다.

504 조항 평가 회의 진행

504 조항하에 학생을 평가할 때, 504 조항팀은 학부모/후견인의 의견, 학생의 의견(가능한 경우)을 포함한 다양한 자료를 통한 정보를 고려해야 합니다. 504조항팀은 적응평가와 성취평가 시험, 성적표, 교사 보고서, 관찰, 교육과 건강 기록, 적응행동의 평가, 의료적, 정신적 발달적 보고서와 같은 존재하는 학생 정보를 검토합니다. 팀은 학부모/후견인에게 학생의 신체 또는 정신적 결함이나 손상에 관해 토론한 기회를 제공하며 504 조항 요건을 설명하고 조항 요건에 따라야 합니다.

504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증거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

1. 학생이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²
2. 신체 또는 정신적 결함이나 손상이 학생의 주요 생활 활동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3. 신체 또는 정신적 결함이나 손상이 주요 생활 활동을 실질적, 상당히 제한을 준다; 실질적 제한은 학생의 주요 생활 활동을 장애가 없는 또래 학생과 비교하여 결정합니다.

학생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여부 판단

504 조항은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를 "다음 신체 구조: 신경학적 조직, 근골격, 특별 감각기능, 언어기관을 포함한 호흡 기관, 심혈관, 생식기관, 소화기관, 비뇨생식기관, 혈액과 림프기관, 피부, 내분비기관 또는 지적장애, 기질성 뇌증후군, 정서 정신병과 특수 학습장애를 포함한 정신, 심리학적 장애 중 하나 이상에 영향을 주는 모든 생리학적 부조, 상태, 외관상의 손상이나 결함 또는 해부학적 손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4 C.F.R. § 104.3.

¹ 만약 학생이 IDEA에 해당할 경우, 학생은 개별 교육 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IEP)을 통한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IEP와 504 조항 계획 모두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IEP는 예를 들어 자폐증 학생으로 당뇨병이 있을 경우 등, 504 조항하에 필요한 조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의 504 조항과 장애 아동의 교육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Section 504 and the Education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질문 36을 보십시오.

²용어에서 "장애"에 해당하는 모든 개념과 예는 U.S. Department of Education, Parent and Educator Resource Guide to Section 504 in Public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를 보십시오.

504 조항팀은 학생의 장애를 고려하는 준비된 서류를 검토하고 고려합니다. 만약 팀이 결정을 위해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팀은 평가가 필요하다고 결정하고 MCPS Form 336-31, Authorization for Assessment를 사용하여 학부모/후견인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만약 팀이 학생이 집중력에 관한 문제가 있다고 여기며 외부 진단이 없을 경우, MCPS Form 270-2a, 학교 심리학자 504 섹션 집중 장애 평가시험 허가서(Authorization for School Psychologists Section 504 Attentional Disorders Assessment)를 작성합니다. 외부 진단 서류는 공식 평가, 의사의 소견서, 처방전 패드의 메모가 포함됩니다. 팀은 외부 진단에 관한 추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MCPS Form 336-32, 비밀이 보장된 정보의 제공 및 공유 허가서(Authorization for Release/Exchange of Confidential Information)를 작성하여 학부모/후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04 조항하에는 504 조항에 해당하기 위해서 학생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의 결과로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장애가 있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은 없습니다.

주요 생활 활동이 장애로 인해 영향을 받는지 여부 결정

504 조항에서의 "주요 생활 활동"이란, "자신 돌보기, 설명에 다른 업무수행, 걷기, 보기, 듣기, 말하기, 숨쉬기, 배우기, 일하기, 서기, 들기, 몸 굽히기, 읽기, 집중하기, 생각하기, 의사소통하기와 같은 기능 모두를 의미합니다. 34 C.F.R. § 104.3과 29 C.F.R. §1630.2. 주요 신체 기능은 법에 따라 주요 생활 활동이며, 주요 신체기능에는 장, 방광, 뇌; 일반 세포 성장; 면역과 내분비(예를 들어 갑상선, 뇌하수체, 췌장 등), 호흡기, 생식기, 순환기, 소화기, 신경계가 포함됩니다.

학생의 장애에 하나 이상의 주요 생활 활동이 관련된 경우, 이를 꼭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팀은 504 조항 온라인 플랫폼에 있는 504 조항 해당 여부 양식을 작성할 때 준비된 학생의 결함이나 손상이 주는 영향을 고려합니다.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가 학생의 주요 생활 활동에 영향 주는지 여부 결정

미국 장애인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mendments Act of 2008-ADAAA) 은 갱신을 통해 현저한 제한을 고려할 때 "폭넓게 해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애의 기본 정의는 안 바뀌었습니다만, 이 ADAAA 갱신은 또한 504 조항에도 해당됩니다. 학생은 주요 생활활동을 제한하는 장애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명시된 장애는 학생의 주요 생활 활동을 막거나 심각하게 제한하는 장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504 조항팀은 주요 생활 활동의 우려점에 관한 준비된 서류를 고려할 때,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제한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고려합니다. 팀은 주요 생활 활동에서의 학생의 활동을 비장애 동료 학생들의 활동과 비교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이 주요 생활 활동에 심각한 제한 여부를 결정할 때, 도래 비장애 학생의 주요 생활 활동과 방식 또는 개인의 주요 생활 활동에 드는 시간 등을 비교하면 결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상태, 방식, 시간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주요 생활 활동에의 어려움이나 노력 또는 시간을 고려, 주요 생활 활동을 할 때 통증 여부, 주요 생활 활동에 걸리는 시간, 결손이나 손상, 장애가 주요 신체 기능 활동에 주는 영향 등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완화 측정의 개선효과(Ameliorate Effects of Mitigating Measures)

결손/손상이나 장애가 현저하게 주요 생활 활동을 제한하는지의 결정 여부는 다음과 같은 완화 측정의 개선 효과에 연관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약, 의약품, 설비, 기구, 저시력 기기(일반적인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손발과 기기를 포함 한 보철, 청각기기와 인공귀 또는 다른 이식 청각 기기, 이동기기, 산소치료 기기와 조구. “저시력 기기(low-vision devices)”는 확대, 향상 또는 시각적 이미지 증강을 하는 기기를 의미합니다.
2. 보조 테크놀로지의 사용
3. 적절한 조정 또는 보조 도구/도움 또는 서비스
4. 행동적 또는 적용 가능한 신경학적 조정

일반 안경이나 콘택트렌즈의 완화 측정의 개선효과는 주요 생활 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손/손상인지 여부를 잘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반 안경이나 콘택트렌즈(ordinary eyeglasses or contact lenses)”는 시각적 정확성과 굴절에 따른 오차를 온전히 교정하기 위한 렌즈를 의미합니다.

완화 측정의 개선효과가 아닌 경우(예를 들어 약이나 특정 섭생 치료에 따른 부담 등)가 개인의 결손/손상이 주요 생활 활동을 제한하는지를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학생이 “504 조항 평가 회의 시행(Conducting the Section 504 Evaluation Meeting)” 하의 다음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학생은 504 조항 계획에 해당합니다.

특수 고려대상

1. 주의 결핍성 과활동 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s): 학생이 주의 결핍성 과활동 장애로 여겨질 경우, 학교 심리학자가 회의 팀원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학교 심리학자는 또한 팀을 도와 학부모/후견인이 외부의 진단서를 제공하지 않는 한, MCPS Form 270-2A, 학교 심리학자 504 섹션 집중 장애 평가시험 허가서(Authorization for School Psychologists Section 504 Attentional Disorders Assessment)를 작성해야 합니다. 팀은 차후의 504 조항 회의에서 검토하기 위해 추가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2016년 7월 26일,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Dear Colleague Letter and Resource Guide on Students with ADHD를 보십시오.
2. 임시 및 일시적인 장애 504 조항에 따르면 적격 조사는 장애가 임시적이거나 영구적이거나 다르지 않습니다. 심각한 장애가 임시적 신체 또는 정신적 손상인지의 문제는 케이스에 따라 평가하며 손상의 기간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기간) 학생의 주요 생활 활동을 실제로 제한하는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주요 생활 활동을 현저하게 제한할 경우, 일시적 장애 또는 차도가 있는 장애도 또한 504 조항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3. 능력이 높은 학생: 학생이 높은 수준으로 대학 선이수과목 (Advanced Placement-AP), 어너, 메그넷 프로그램 또는 국제학사 학위 프로그램 반에 등록된 학생이라서 504 조항 해당 여부에서 자동적으로 배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높은 수준의 학생도 주요 생활 활동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은 “본인의 원래 수준(level the playing field)”을 수강해야 하며 조정을 통해 AP나 어너 과목에 해당될 수는 없습니다. 높은 수준의 학생의 504 조항 승인이 자동적으로 거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생의 장애가 MCPS 또는 MCPS가 후원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제한할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MCPS 504 조항팀은 학부모/후견인의 요청에 따라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504 조항팀은 504 조항 해당 여부를 위해 504 조항 평가를 완수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결과에도 504 조항 계획을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학생이 MCPS에 다니게 될 경우, 학생이 조정에 해당될 경우, 504 조항 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학부모/보호자는 사립학교에 평가한 결과 서류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5. 의료적 상태: 심각한, 의료적 결손/손실(예를 들어 생명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천식, 당뇨 등)에 따라 504 조항하의 장애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의학적 도움을 받는 학생의 대부분이 Individual Health Care Plan(IHCP)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504 조항 계획은 IHCP와 다릅니다. 이는 학생에게 안전한 교육을 제공하여 목표성취와 차별에서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교실과 다른 장소 또는 활동에서의 지침을 제공합니다. MCPS 정책과 절차 기준이 학생의 의료 및/또는 다른 특별한 필요에 맞지 않을 경우, 504 조항 계획은 학교와 학생, 학생 가족 간에 계획되는 추가 단계입니다. 당뇨가 있는 학생을 위한 추가 정보는 2017년 5월 발행한 Maryland State School Health Services Guideline, Management of Diabetes in Schools를 보십시오.

학생이 조정의 필요 여부 결정

신체 또는 정신적 손상이나 결함이 있는 모든 학생이 적절한 무상교육(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FAPE)을 받기 위해 504 조항이 요구하는 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정이 요구되지 않아도 학생은 504 조항하의 차별 금지의 보호에 해당되며 온라인 504

조항 플랫폼에 따라 팀은 팀의 결정의 합당성과 결정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를 504 조항 양식에 적어야 합니다.

학생이 504 조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504 조항 팀은 학생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추천사항을 만들고 이 정보를 온라인 504 조항 플랫폼의 적절한 양식에 적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학부모/후견인에게 MCPS 권리 절차 보호에 관한 안내(Due Process Safeguards Information:)안내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1973년 재활법 504조항(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해당하는 MCPS 학생의 504 조항 계획 개발

개요

이 항목은 504 조항 계획 개발의 지침을 제공하는 항목입니다. 학생의 504 조항 해당 여부를 결정할 때, 504 조항팀은 학생이 적절한 무료 공교육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정을 고려해야 하며 해당할 경우, 504 조항 계획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 법적 의무 계획은 학생의 장애 결과에 따라 필요한 독특한 필요를 조정하기 위한 대략적 개요를 제공합니다. 이 계획은 MCPS가 학생에게 제공하게 되는 필요한 조정과 서비스를 명시합니다.

504 조항팀

학교장은 학교의 504 조항팀을 504 조항 요건에 맞는 사람으로 구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504조항은 504 조항에 따른 결정이 "학생을 잘 아는 사람, 평가 데이터의 의미를 잘 아는 사람 그리고 배치 옵션을 잘 아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504팀에는 다음 사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학교장 또는 대리인
- 학생과 일하는 교사 최소한 한 명
- 적절한 추가 교직원, 학교 심리학자, 학교 카운슬러, 학생 담당관(pupil personnel worker-PPW), 학교 간호사와 이 계획 적용에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의 장애가 천식일 경우, 학교 간호사가 팀원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학부모/후견인은 또한, 504 조항 계획 개발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습니다 그리고
- 학생도 적절할 경우 회의 참석 초대를 받습니다.

504 조항 계획의 계획 개발을 위한 준비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팀은 학생의 504 조항 평가와 다음과 같은 현재 정보를 검토해야 합니다-

- 성적표 데이터
- 교사 보고;
- 학교에서의 시험
- 커리큘럼에 기반한 평가시험
- 공식 평가
- 현재 건강기록과/또는 의료 갱신기록
- 학력에 관련된 서류와/또는 행동 개입/중재에 관한 서류
- 학년 수준 팀 회의와 상의;
- 관찰한 내용의 구두와 서면 서류;
- 학부모 의견 (MCPS Form 336-39, Parent Report, 적절한 경우 이 양식을 사용해도 됨) 그리고
- 적절할 경우 학생의 의견

504 조항 계획 쓰기

만약 504 조항팀이 계획을 개발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있다고 여길 경우, 504 조항 팀은 해당 여부를 결정한 후 계획을 개발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504 조항은 학생이 504 조항에 해당한다는 결정 후 504 조항팀이 추가 평가/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30 달력일 이내에 개발되어야 합니다. 추가 평가/검토는 학생이 504 조항 해당이 결정된 후 60 달력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2017년 9월 5일부터 팀은 504 조항 계획을 온라인 504 조항 플랫폼을 통해 작성하게 됩니다. 팀 참석자의 이름과 직함을 이 양식에 기재해야 합니다. 추가 회의 기록을 504 조항 계획을 구성할 때 기록해야 합니다.

배경 정보

504 조항팀은 학생의 해당 여부를 결정한 날짜를 각 계획에 기록해야 합니다. 계획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특정 결손/손상이 적격 여부 회의에서 확인되었습니다.
- 학생의 주요 생활 활동이 장애로 인하여 제한됩니다.
- 교육적 필요가 평가팀 회의에서 확인되었습니다.

504 조항 계획

계획에는 조정, 프로그램 수정, 교습적 접근, 도움 서비스의 사용, 교통제공이 포함되며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장애가 없는 학생과 같은 정도로 제공됩니다. 추천 조정은 다음에 관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손상/경손 부분에 관련되어야 합니다.
- 학생의 독특한 필요를 반영합니다.
- 장애가 없는 또래의 학습(또는 장애에 따라 활동)과 같은 동일한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 학생이 교과과정에 동등하게 접근하고 성취도에서 동등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해야 합니다.
- 계획의 적용되는 장소와 시기를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적용 책임자를 명시해야 합니다.

조정은 학생의 장애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에 대한 추가 조정은 503 조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하지만 교사가 최선을 다해 제공합니다.

504 조항을 계획할 때, 504 조항팀은 주요 생활 활동에서 학생의 정신적 신체적 결손/손상으로 제한에 따른 필요를 증명하는 서류를 통해 조정을 추천해야 합니다.

504팀은 일반 교습에 따라 제공되는 시험에의 조정을 명시해야 하며 카운티 또는 주 평가시험에서 조정이 제공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조정은 학생의 정신 또는 신체적 장애/손상에 관련되어야 합니다.

회의 마무리

504팀은 다음을 통해 회의를 마무리 하게 됩니다:

- 검토한 날짜 확인, 1년 이내
- 케이스 매니저 확인(예: 교실 담임, 학교 카운슬러, 팀리더)
- 학부모/후견인이 이 회의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받고 보관
- 학부모/후견인에게 MCPS 권리 절차 보호에 관한 안내(Due Process Safeguards Information) 사본을 504 조항 회의 말에 제공

회의 후, 케이스 매니저는 계획 사본을 조정 적용을 맡은 사람 모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케이스 매니저는 504 조항 회의 사본을 책임 맡은 모든 사람이 받았을 확인하는 MCPS Form 270-2d, Distribution of Section 504 Plan을 작성합니다. 해당할 경우, 학교 간호사와 관련 서비스 제공자도 이에 포함됨을 기억합니다.

504 조항 절차 검토 평가

개요

504 조항팀은 504 조항에 해당하는 학생이 적절한 서비스, 조정과 조절을 받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매해 재평가를 실행해야 합니다. 검토회의는 연례회의 전에 필요한 경우, 개최됩니다. 재평가는 배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언제든지 실시 되어야 합니다. (예: 10일 이상의 정학, 정학, 퇴학, 전학에 따른 이동 등) 추가로 학부모/후견인은 504 조항을 언제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학생이 계속 학비면제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본 사무실에 다음 서류의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504 조정 계획에 따라 학생의 조정을 적용하는 모든 교육자 는 MCPS Form 270-2c, Section 504 Progress and Accommodation Review Worksheet와 MCPS Form 272-7, Elementary Teacher Report 또는 MCPS Form 272-8, Secondary Teacher Report를 작성하여 504 조항 매니저에게 회의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504 조항 절차 재평가 회의

검토양식을 작성 시 다음 질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04 조항 절차 재평가

- 학생이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습니까?
- 신체 또는 정신적 손상이 학생의 주요 생활 활동에 영향을 줍니까?
- 신체 또는 정신적 손상이 학생의 주요 생활 활동을 계속적으로 제한합니까? 실질적 제한은 학생의 주요 생활 활동을 장애가 없는 또래 학생과 비교하여 결정합니다.
- 학생은 조정이 계속 필요합니까?
- 학생은 현재 504 조항 계획에 명시된 조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닌 경우, 어느 조정을 더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504 조항 계획이 계속적으로 학생에게 적절합니까? 아닐 경우, 조정을 추가 또는 취소해야 합니까?

학생이 더 이상 조정이 필요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504 조항 팀원은 학생이 더 이상 504 조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결정하기 전에 재검토를 실시해야 합니다.

재검토의 첫 단계는 학생의 현재 필요를 검토하고 학생이 정식 조정이 더 이상 필요 없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학생의 필요를 검토할 때, 504 조항팀은 다양한 출처로부터의 정보를 검토해야만 합니다. 504 조항을 제거하는 모든 결정은 증거서류의 검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당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504 조항팀은 학생의 해당 여부를 결정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

504팀은 현재 정보를 사용하여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1. 학생이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
2. 신체 또는 정신적 결함이나 손상이 학생의 주요 생활 활동에 영향을 준다.
3.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가 학생의 주요 생활 활동에 영향을 준다. 실질적 제한은 학생의 주요 생활 활동을 장애가 없는 또래 학생과 비교하여 결정합니다.

팀은 또한 504 조항 계획이 있는 학생이 공식화된 조정없이 또래 비장애 학생들과 비교하여 동등하게 학생을 위한 MCPS 학습 프로그램과 활동에 접근할 수 있습니까?

만약 504 조항팀원이 학생의 장애가 더 이상 "현저하게 제한을 준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여길 경우, 팀은 학생이 504 조항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않음을 평가 양식에 명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학생의 비공개/비밀유지 파일에 보관합니다.

504 조항 학생의 훈육 절차

개요

504 조항이 학생의 행동에 관련된 규정을 연장하여 설명하고 있지 않으나, 504 조항 계획의 학생은 훈육위반으로 정학이나 퇴학을 받을 경우, 특별한 보호가 적용됩니다.

문제에 대한 원인 규명/인과관계 규명 회의 절차

504 조항의 보호를 받는 학생과 504 조항 계획은 한 주요 예외를 제외하고 일반교육 학생과 같은 훈육제재를 받습니다. 만약 504 조항 학생이 정학을 받아 배치에 큰 변화가 있을 경우, 특정 이의제기 절차가 적용됩니다. 배치에의 큰 변화는 퇴학과 연속 10일간의 학사일정일 이상의 정학을 의미합니다. 학생이 계속 받은 정학이 각각 10일 미만인 경우는 "배치에의 큰 변화"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학사연도에서 빠진 10일째되는 날(연속 또는 누적), 504 조항팀은 학생이 정학을 받는 것이 504 조항에 해당하는 장애가 "원인"인지를 규명하는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인과관계 규명 회의는 일반적으로 연례 검토회의에 참석하는 504 조항 팀원이 포함됩니다. 추가로 회의에 참석하는 504 조항 팀원은 평가 데이터와 배치 옵션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학생과 학생의 장애에 대해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인과관계 규명 회의는 훈육조치가 이루어지자마자 또는 정학이 시작되자마자 가능한 한 빨리 회의일정을 정해야 하며 학부모/후견인은 회의 목적에 관해 회의 전에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회의는 신속하게 추진되어 학사일정 중 10 일째 되는 날 이전에 가져야 합니다. 사전 통보는 학부모/후견인에게 전화를 통해 제공될 수 있으며 날짜와 시간, 장소와 회의 목적을 알려야 합니다. 전화통화는 기록되어야 하며 회의에 대한 서면 통보가 함께해야 합니다.

회의 중에 504 조항팀은 온라인 504 조항 플랫폼을 통해 인과관계 규명/명시 검토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한 양식의 사본을 학생 비공개파일에 보관합니다.

만약 팀이 문제가 학생의 장애가 "원인"이라고 결정할 경우, 학생은 현재 프로그램(교육환경)으로 즉시 돌아가야 합니다. 학부모/후견인과 교직원이 동의할 경우, 다른 교육적 환경이 추천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환경 변경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생은 현 학교 프로그램(교육적 환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팀이 학생의 태도는 학생의 장애때문이라고 판단할 경우, 학생은 비장애 학생과 같이 학교에서 배제되게 됩니다. 훈육절차는 해당 주법, MCPS Student Code of Conduct, A Student's Guide to Rights and Responsibilities, 그리고 MCPS Regulation, JGA-RC, Suspension and Expuls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504 조항 계획의 학생에게의 교육적 도움은 MCPS Student Code of Conduct에 따라 비장애 학생과 같은 방법으로 제공되게 됩니다.

504 조항 계획 학생의 약물이나 알코올 사용에 대한 훈육조치

504 조항에서는 현재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약물 또는 알코올의 남용은 장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약물이나 알코올 갱생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학생은 재활 중이 아닌 이상, 또는 현재 재활 프로그램의 감독을 받고 있지 않는 한, 504 조항하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약물이나 알코올을 남용하는 학생은 원인 규명 회의 또는 다른 504조항 보호에 해당이 안 됩니다. MCPS는 "504 장애 조항이 있는 학생에 대한 약물 또는 알코올 사용 또는 소유는 약물 또는 알코올의 불법적 사용과 관련이 있다."는 관련 훈육행동 지침에 따라 비장애 학생의 경우와 같이 훈육조치를 하게 됩니다.

현재 불법적인 약물사용이란 최근에 약물을 사용 또는 계속 실질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사용한다고 충분히 믿을 만한 불법적 약물 사용을 의미합니다. 약물은 schedules I through V of Section 202 of the Controlled Substances Act (21 U.S.C. § 812)에 명시된 바와 같은 규제약물을 의미합니다.

학교 소유지에서 마약과 약물을 사거나 판매, 제공하여 훈육 처벌을 받은 학생은 인과관계/원인 규명 회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팀이 인과관계나 원인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학생은 비장애 학생이 받는 조치와 똑같은 훈육조치를 받게 됩니다. 만약 팀이 학생의 태도는 학생의 장애때문이라고 판단한 경우, 학생은 현 학교 프로그램(교육적 환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학교 소유지에서 무기를 소지한 504 조항 계획 하 학생의 훈육 조치

훈육 처벌이 화기에 관련된 경우, 팀은 18 U.S.C. § 921(a), to ensure consistency with the Gun-Free School Act에 명시된 바와 같이 MCPS 504 조항 코디네이터와 상의해야만 합니다.

504 조항 계획 학생이 총기 이외의 무기를 학교에 가지고 와서 훈육 징계를 받게 된 경우, 학생은 인과관계/원인 규명 회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팀이 인과관계나 원인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학생은 비장애 학생이 받는 조치와 똑같은 훈육조치를 받게 됩니다. 만약 팀이 학생의 태도는 학생의 장애때문이라고 판단한 경우, 학생은 현 학교 프로그램(교육적 환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과관계 규명 회의 청구

학부모/후견인에게 MCPS 권리 절차 보호에 관한 안내 14}Due Process Safeguards Information:)안내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학부모/후견인이 결정된 인과 관계 규명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 검토, 중재와/또는 적법절차에 따른 청문을 통한 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e 34 C.F.R. § 104.36. 추가 정보는 [Montgomery 카운티 교육위원회 정책\(Policy\) BLC, 특수교육 쟁점의 검토와 해결에 관한 절차\(Procedures for Review and Resolution of Special Education Disputes\)](#)를 참조하십시오.

관련 서비스

504 조항에 따라, 학생은 적절한 공립교육(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할 수도 있음)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학생에게는 비장애 또래 학생과 같은 교육적 기회에 대한 동등한 접근이 보장됩니다.

관련 서비스는 이 도움에 대한 보장을 준비해 줍니다. 504 조항팀이 관련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서나 또는 학부모/후견인이 관련 서비스를 포함한 504 조항 계획의 적용을 요청할 경우, 적절한 관련 서비스 교직원에게 상의해야 합니다.

MCPS 관련 서비스 담당자는 관찰을 통해 또 필요한 경우, 기능평가의 실시, 504 조항 계획 또는 검토 회의 참석, 추천한 조정 적용을 위한 적절한 훈련을 제공하며, 학생의 학교에서의 모든 접근과 모든 학교 활동에서의 접근에 관해 교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학부모/후견인의 협력과 참여

학부모/후견인은 가정/학교 파트너십관계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부모님/후견인은 504 조항 절차에서 공동 파트너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학교 교직원은 학부모/후견인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 절차 참여를 장려해야 합니다.

법에서는 절차적 보호규약(procedural safeguards)이 학부모/후견인이 504 조항 교육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책정되어 있습니다.

504 조항 항목에는 학부모/후견인이 학생이 법 요건을 충족한다고 여길 경우, 504 조항 해당 여부 회의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504 조항은 초기 평가에서 학부모 사전 동의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고려사항과 학부모/후견인이 학교에 제공한 정보를 검토하기 위한 504 팀 회의일정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의는 학생이 직면한 힘든 부분에 관해 생각해보는 기회입니다.

504 조항에 해당되는 학생을 위한 방법 및 전략과 개발을 식별하는 것은 협력관계와 자발성을 육성하고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한 책무성을 보호해 줍니다.

504 조항팀은 504 조항아래 학생의 적합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504조항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학부모/후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MCPS Form 336-31, [Authorization for Assessment](#)참조)

504 조항 계획의 개발에서 학부모/후견인을 포함하는 것은 절차에 포함된 단계입니다. 학부모/후견인은 계획 개발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팀은 계획 개발과 합리적이며 적절한 조정과 방법/전략을 결정할 때, 학부모/후견인의 의견과 추천을 수용해야 합니다.

만약 학부모/후견인이 계획이나 절차의 일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팀은 학부모/후견인에게 이의제기 절차 옵션에 관해 알립니다. 그러나 먼저 학교 수준에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도움이나 Resolution and Compliance Unit의 MCPS 504 조정 코디네이터의 참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504 조항 안내책자: 1973년 재활법에 따른 504조항 학부모/후견인 안내서(A Parent's/Guardian's Guide to 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와 적법 절차 보호 안내 (Due Process Safeguards) 정보를 학부모/후견인에게 504 조항팀 회의 전이나 팀 회의 시 제공해야 합니다.

504 조항 학생의 이의제기 절차

다음은 504 조항에 해당하는 장애 학생의 학부모/후견인을 위해 보장되는 연방정부의 권리 요약 MCPS Regulation ACG-RB, Reasonable Accommodations and Modifications for Students Eligible Under 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의 요약입니다.

- 학생의 장애로 인한 차별 없이 공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식별, 평가, 재평가, 프로그램 결정 및 배치 결정에 참여하고 통보를 받을 권리
- 적절한 무상 공립교육을 받을 권리. 장애가 없는 학생과 함께 최대한 적절한 상황에서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함합니다.
- 가능한 경우, 학교 프로그램 및 학교가 후원하는 방과후 활동참여에 장애가 없는 학생과 동일한 기회를 갖는 권리
- 학생을 잘 아는 사람이 제공하는 정보 및 평가자료와 프로그램의 선택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식별, 평가, 배치/프로그램 결정을 받는 권리
- 법과 MCPS Regulation JOA-RA, Student Records에 따라 자녀의 교육기록을 살펴보고 이 기록의 복사본을 받을 권리 그리고,
- 식별, 평가, 재평가, 배치/프로그램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권리

이 권리는 RACU Section 504 웹사이트에 있는 MCPS 504 조항 안내 책자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504 조항 안내책자는 학부모/후견인에게 504 팀 회의 초대 시, 504팀 회의 때 또는 요청에 따라 제공해야 합니다. 504조항 계획이 학생을 위해 개발될 경우,

학부모/후견인은 504 조항 계획 개발에 여하였음을 확인하고 절차적 보호규약 사본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합니다.

추가 자료 요청

504 조항 계획 적용에의 추가 자료 요청 (학교에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일반 교육 학생을 위한 504 조항 계획 적용을 위한 조정과 조치 전략은 주로 일반 교육 수업 교사의 주도하에 이루어 집니다. 504 조항팀이 결정한 학생이 필요한 자료, 테크놀로지 또는 교직원 총원이 학교에 현재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 학교장, 또는 대리인은 504 조항 코디네이터와 교육청 직원과 함께 추가 자료를 요구해야 합니다.

용어

장애

미국 장애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ADA) 하의 장애는 (a) 개인의 하나 이상의 주요 생활 활동에 하나 이상의 실제적인 제한을 미치는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 (b) 장애에 대한 기록; (c) 이와 같은 장애가 있다고 간주될 경우

동등한 기회

공공기관이 후원 및/또는 자금을 대는 교육 도움, 혜택, 서비스 참여 및/또는 혜택에의 장애가 있는 학생의 동등한 참여와 기회

평가

학생이 504 조항하의 장애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평가에 따라 504 조항 계획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학생의 초기 배치를 존중하여 504 조항 해당 학생을 위한 행동을 취하기 전 그리고 어떠한 현저한 배치를 이루기 전에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가 데이터에는 공식, 비공식 시험 수단, 적성평가와 성취도 시험, 교사 추천서, 신체 의료 기록, 학생 성적, 진도 보고, 학부모/후견인 관찰, 일화기록, 행동평가 등이 포함됩니다.

적절한 무상 공립교육

504 조항의 목적을 위해 "적절한 무료 교육(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FAPE)"은 장애가 없는 학생의 필요와 같이 장애가 있는 학생 개인의 교육적 필요에 맞도록 짜여진 일반 또는 특수교육과 관련 도움 및 서비스 규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504 조항 요건에 따른 교육적 환경, 평가, 배치와 절차적 보호조약 요건을 충족하는 절차에 충실히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IDEA)과는 다른 기준입니다만 IDEA 하의 FAPE의 요구는 또한 504 조항하의 FAPE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34 C.F.R. § 104.33

최소한의 제한적 환경(Least Restrictive Environment-LRE)

장애가 있는 학생의 필요는 가능한 한 장애가 없는 또래 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조 도움이나 서비스를 사용하여 일반 환경에서 장애 학생이 교육을 받는 것이 만족할만한 성취를 이룰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장애가 있는 학생은 일반 교육 환경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34 C.F.R. § 104.34.

주요 생활 활동(Major life activity)

용어 "주요 생활 활동(major life activity)"이란 다음을 포함하지만 다음에만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1. 자신 돌보기, 손으로 하는 작업, 보기 듣기, 잠자기, 걷기, 서기, 앉기, 손 뻗기, 들기, 몸 굽히기, 말하기, 숨쉬기, 학습하기, 읽기, 집중하기, 생각하기, 쓰기, 의사소통하기, 타인과 상호작용하기, 일하기와
2. 주요 신체 기능에는 면역체계, 특별 감각기능과 피부, 일반 세포의 증식과 성장, 소화, 비뇨생식기, 장, 방광, 신경계, 뇌, 호흡기, 혈액순환, 심혈관, 내분비, 혈액, 림프와 근골격, 생식기 시스템을 포함합니다. 주요 신체 기능 활동에는 몸의 개인 신체기능이 포함됩니다. 34 C.F.R. § 104.3와 29 C.F.R. §1630.2

측정 완화(Mitigating Measures)

용어 "측정 완화(mitigating Measures)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다음에만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1. 약, 의약품, 설비, 기구, 저시력 기기(확대경, 향상기 또는 시각적 이미지 증강기 그러나 일반적인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손발과 기기를 포함한 보철, 청각기기와 인공귀 또는 다른 이식 청각 기기, 이동기기, 산소치료 기기와 조구
2. 보조 테크놀로지의 사용
3. 이 규정에서 정의한 합당한 조정 또는 보조기기 또는 서비스
4. 행동적 또는 보정을 위한 신경학적 조정 또는
5. 정신치료, 행동치료, 신체 치료

차별 금지

504 조항에 명시된 차별금지 미국 내 장애를 갖은 개인은 개인의 장애 이유로 인하여 참여로의 제외, 혜택의 거부 또는 프로그램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504 조항하에서 수혜자는 공공기관의 예산 그리고/또는 후원 프로그램 접근에 의 차별을 금지하며 프로그램, 활동, 서비스에의 참여에 공평한 기회를 받아야 합니다.

Montgomery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504 조항의 차별금지 정책을 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교육위원회 Policy ACA, 차별금지, 평등 및 공평과 문화적 능력(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을 봅시다.

용어

시민의 평등권 사무실(Office for Civil Rights)

미국 Department of Education의 Office for Civil Rights는 504 조항의 시행과 법 하에서의 불만이나 문제를 조사합니다.

학부모

504 조항 하에서 "부모/학부모(Parent)"는 생물학적 부모, 위탁 부모, 전반적으로 아동의 부모로 행동할 수 있도록 승인된 후견인(예: 학생과 함께 살고 있는 조부모) 또는 법적으로 학생양육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

1. 신경학적 조직, 근골격, 특별 감각기능, 언어기관을 포함한 호흡기관, 심혈관, 생식기관, 소화기관, 비노생식기관, 혈액과 림프기관, 피부, 내분비기관 중 하나 이상의 신체에 영향을 주는 모든 생리학적 부조, 상태, 외관상의 손상이나 결함 또는 해부학적 손실 또는,
2. 지적장애, 기질성 뇌증후군, 정서 또는 정신적 질병과 특수 학습장애를 포함한 정신 또는 심리학적 장애

신체 또는 정신적 손상에는 전염성, 비전염성 질병과 상태를 포함합니다. 이에에는 다음을 포함합니다만 이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정형외과적, 시각, 언어능력, 청각 장애, 뇌성마비, 간질, 근위축증, 다발성 경화증, 암, 심장병, 당뇨, 지적장애, 정서적 장애, 난독증, 특수 학습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 활동 장애, 휴먼면역결핍바이러스 HIV (증상 또는 무증상), 결핵, 약물중독(현재 사용)과 알코올 중독. 34 C.F.R. § 104.3

504 조항 계획

504 조항은 504 조항팀이 개발한 서면 기록으로 적절한 무료 공교육 제공, 학생의 개별교육의 필요에 따라 작성된 일관된 조정과 관련 기기, 서비스 제공이 포함됩니다.

상당한 제한 (Substantially Limits)

“상당한 제한(substantially limits)”이란 ADA와 ADAAA의 용어를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확대한 범위로 해석해야 합니다. (504 조항은 ADAAA에서 책정된 이 기준을 포함합니다) 정신적 또는 신체적 손상이 경감측정의 개선효과(안경이나 콘택트렌즈는 예외) 없이 또래 비장애 학생들과 비교하여 학생의 주요 생활 활동 능력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경우, 이 부분에서의 의미는 장애를 의미합니다. 장애를 실질적인 제한으로 여겨 학생의 주요 생활 활동을 예방, 현저하게 또는 심각하게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생은 주요 생활 활동을 제한하는 장애가 있어야만 합니다. 장애가 일시적이거나 차도가 있을 경우에도 만약 활동시 주요 생활 활동을 현저하게 제한 한다면 이는 장애입니다.

MCPS 504 조항 양식

504 조항 평가, 504 조항 계획, 원인과 인과관계 회의와 모든 504 조항 초대 편지는 온라인이 있는 504 조항 플랫폼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경우, 다음 MCPS 양식을 적절하게 사용합니다.

MCPS Form 270-2A, 학교 심리학자 504 섹션 집중 장애 평가시험 허가서(Authorization for School Psychologists Section 504 Attentional Disorders Assessment)

MCPS Form 270-2C, 504 조항 계획 절차와 조정 검토 작업용 워크시트(Section 504 Progress and Accommodation Review Worksheet) (비공개/Confidential)

MCPS Form 270-2D, 504 조항 계획의 배포(Distribution of Section 504 Plan) (비공개/Confidential)

MCPS Form 272-9, 교사 위탁/의뢰(Teacher Referral)

MCPS Form 272-7, 초등학교 교사 보고서(Elementary Teacher Report)

MCPS Form 272-8, 중고등학교 교사 보고서(Secondary Teacher Report)

MCPS Form 336-31, 비밀이 보장된 정보의 제공 및 공유 허가서(Authorization for Release/Exchange of Confidential)

MCPS Form 336-32: 비밀이 보장된 정보의 제공 및 공유 허가서(Authorization for Release/Exchang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MCPS Form 336-68, 외부 보고서에 관한 팀의 고려사항(Team Consideration of External Report)

MCPS 규정과 보조 서류

MCPS Regulation ACG-RB, 1973년 504 장애법에 해당되는 학생을 위한 적절한 조정 및 수정(Reasonable Accommodations and Modifications for Students Eligible Under 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Policy JGA-RC, 장애 학생의 정학과 제적(Suspension and Expuls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A Parent's/Guardian's Guide to 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안내책자는 504 조항 웹사이트의 RACU에 있습니다.

이의제기 절차에 관한 안내: 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안내책자는 504 조항 웹사이트의 RACU에 있습니다.

504 조항관련 자료

U.S. Department of Education, Parent and Educator Resource Guide to Section 504 in Public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U.S. Department of Education,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Section 504 and the Education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U.S. Department of Education, Frequently Asked Questions, Disability Discrimination

U.S. Department of Education, Questions and Answers on OCR's Complaint Process

MCPS 차별 금지 성명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는 인종, 민족, 피부색, 조상, 조국, 종교, 이민상태, 성, 성별, 성 역할, 성 표현, 성 취향, 가족/부모 상태, 결혼상태, 나이, 육체적 정신적 장애, 가난, 사회경제적 상태, 언어, 또는 합법적이고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성향 관련으로서의 차별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차별은 오랫동안 우리가 심여를 기울여 만들어 육성하고 향상시켜 온, 모두에 대한 형평, 포용, 수용에 관한 우리의 노력을 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차별의 일부 예에는 증오적 행동, 폭력, 무감각, 괴롭힘, 불링/왕따, 무례 또는 보복 등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교육위원회 정책 ACA, 차별금지, 평등 및 공평과 문화적 능력(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을 봅시다. 이 정책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중요하며 특히, 개인의 실제 또는 여겨지는 인적 특성으로 교육적 결과를 예측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위원회의 신념을 단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공평성이란, 목시적인 편견, 정당화할 수 없는 다른 관습, 교육과 고용의 기회의 평등을 저해하는 구조적, 교육적 편견을 발견하고 고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MCPS 교직원에 대한 질문 또는 불평사항*	MCPS 학생에 대한 질문 또는 불평사항*
Office of Employee Engagement and Labor Relations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850 Hungerford Drive, Room 55 Rockville, MD 20850 240-740-2888 OCOO-EmployeeEngagement@mcpsmd.org	Office of School Administration Office of School Administration Compliance Unit 850 Hungerford Drive, Room 162 Rockville, MD 20850 301-279-3444 OSSI-SchoolAdministration@mcpsmd.org

*장애 학생을 위한 조정에 관한 질문, 불평 또는 요청은 Office of Special Education Resolution and Compliance Unit, 수퍼바이저 (전화:301-517-5864)로 문의합니다. 교직원을 위한 조정 또는 조절에 관한 질문은 Office of Employee Engagement and Labor Relations,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240-740-2888로 문의합니다. 추가로 차별에 관한 불평사항은 다른 기관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예: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Baltimore Field Office, City Crescent Bldg., 10 S. Howard Street, Third Floor, Baltimore, MD 21201, 1-800-669-4000, 1-800-669-6820 (TTY); 또는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Lyndon Baines Johnson Dept. of Education Bldg., 400 Maryland Avenue, SW, Washington, DC 20202-1100, 1-800-421-3481, 1-800-877-8339 (TDD), OCR@ed.gov, 또는 www2.ed.gov/about/offices/list/ocr/complaintintro.html

안내서는 영어 이외의 언어와 미국 장애인 복지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른 대체 형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MCPS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and Web Services, 전화번호 240-740-2837, 1-800-735-2258 (Maryland Relay) 또는, PIO@mcpsmd.org로 연락하여 요청합니다. 수화 통역 및 기타 특수 보조 등의 제반 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MCPS의 Office of Interpreting Services, 전화 301-740-1800, 301-637-2958 (VP) 또는 Interpreting_Services@mcpsmd.org로 연락합니다. MCPS는 또한, 보이스카우트/걸스카우트와 다른 지정된 청소년 그룹에 평등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